

문서번호	연구평가본부-1346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6.04.27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

★연구위원	연구개발팀장	연구평가본부장	대표이사	
서종녀	김혜정	류명석	04/27 임성규	
협조	과장 정은정 정은정 팀장 이미자 이미자 실장 김영오 김영오			

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협약제도 도입 방안





사전 검토항목

※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‘무 ■’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내 용
중 장 기 비 전 및 전 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 대 전 략 방 향 :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협력 19대세부전략과제 :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
재 단 내 부 협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 사 실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연 구 평 가 본 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경 영 기 획 실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공 공 협 력 본 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지 역 복 지 본 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서 울 사 회 복 지 공 익 법 센 터 : 유 ■ (법·제도적 해석 및 검토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참 아 가 는 주 민 센 터 단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외 부 관 계 자 협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 울 시 : 유 ■ (연구내용 및 방법, 업무협의 등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자 치 구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기 타 단 체 · 기 관 : 유 ■ (학계·현장전문가 사전 자문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시 민 소 통 계 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 전 준 비 단 계 : 설명회 <input type="checkbox"/> 간담회 <input type="checkbox"/> 교 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문조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문회의 <input type="checkbox"/> 온라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) 사 업 진 행 단 계 : 설명회 <input type="checkbox"/> 간담회 <input type="checkbox"/> 교 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문조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물(정보지,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온라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) 완 료 후 마 무 리 (성 과 보 고 단 계) : 설명회 <input type="checkbox"/> 간담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성과보고회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문조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칼럼/기고문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회의 <input type="checkbox"/> 온라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)

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협약제도 도입 방안

행정의 책무성,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협약제도를 검토하고자 함.

1 추진 근거

-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(재단의 사업) 제1호
 -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
- 서울시 공문(복지정책과-2680호(2016.02.12))
 - 2016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과제 변경 요청(붙임 참고)

2 추진 배경

- 사회복지 인프라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(김진석 외 4인, 2015)
 - 현재 복지행정의 정확한 지침 부족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·운영 모호
 -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운영 관련 법인의 복지업무에 대한 지도·점검, 관리·감독, 재위탁 관련 규정 미흡
 -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‘민간위탁 사무내용’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은 14.3%¹⁾
 -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(2016.2.3)에 의거하여 「지방재정법」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규정 따르도록 법 조항 신설
 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(「지방재정법」 제2장의2 지방보조금 관리 신설(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))
 -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여 최대 3년

1) 설립주체가 법인이며 시설 개소 비율임(김진석 외 4인, 2015: 70).

존속기간 설정하고 연장평가 실시(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보조금법(약칭)」 명명) 제15조, 전문개정, 2016.1.28)

-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와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을 검토하여 공공기관 책무성과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의 공공성 향상 방안 마련 필요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성 확보
 -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는 수탁자의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(평가한 경우 한함)를 기준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4항,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
 - 인권침해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토록 하고 있으며, 시설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·감독 실시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7에 의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
 -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
 - 「보조금법」 제15조에 의해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실시
 -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연장 가능
 -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 또한 연장평가 실시하며 보조사업평가단 구성하여 운영
-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에게 교부되는 보조금 관리·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과 「보조금법」 에 따라 보조금 집행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대응에 대해 서울시 차원 체계 수립

3

추진 개요

연구 개요

- 기간 : 2016. 3~8월
- 대상 :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립·운영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
- 방법 : 문헌고찰, 전문가 의견수렴, 정책간담회, 공청회
- 내용
 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·관리 현황
 - 지방보조사업 관리·운영 배경
 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업무협약제도(안) 제시
 - 정책적 제언

추진 경과

- 학계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 실시
 - 기 간 : 2016. 3. 14(월) 15:00
 - 참 석 자 : 김진석 교수(서울여자대학교)
 - 주요내용 : 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관련 “공공관리 기능 강화” 방안 검토 필요
- 서울시 의견수렴 및 착수보고
 - 일 시 : 2016. 3~4월
 - 참 석 자 : 엄의식 복지정책과장, 구연창 시설법인팀장, 박영용 주무관
 - 주요내용 : 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 “책임성 강화”를 위한 보조금 운영 방안(안) 수립 필요

4

세부 추진 계획

사전 의견수렴·업무협의

- 기간 : 3~4월
- 대상 : 서울시 담당 공무원, 사회복지법인 담당자, 관련 학계 전문가 등
- 내용 : 연구내용 및 방법, 논의 안건 등 의견수렴

자료 및 관련 법·제도 검토

- 기간 : 3~5월
- 대상 : 관련 자료, 법·제도 검토 등
- 내용
 - 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파악
 - 관련 법·제도 검토, 타 부처 보조사업 운영 사례 등

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기간 : 4~7월
- 방법 : 사업자문 및 총괄자문으로 구분하여 운영
- 사업자문위원회
 - 대상 : 학계·현장 전문가 4명, 6회(심사평가 포함)
 - 내용 : 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 업무협약제도(안) 논의
- 총괄자문위원회
 - 대상 : 학계·현장 전문가 5명, 3회(심사평가 포함)
 - 내용 :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(안) 검토
- 예산 : 6,385천원

정책간담회 실시

- 기간 : 6월
- 대상 : 서울시 담당 공무원, 사회복지법인 담당자 등
- 내용 : 업무협약제 내용 및 공공의 역할 등
- 예산 : 310천원

공청회 실시

- 기간 : 6월
- 대상 :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관련 종사자, 학계·현장 전문가, 시민 참여
- 내용 : 업무협약제도(안)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
- 예산 : 1,200천원

보고서 작성 및 발간

- 기간 : 7~8월
- 예산 : 1,000천원

5 추진 일정

추진내용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사전 의견수렴·업무협의						
자료 및 관련 법·제도 검토						
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						
정책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						
보고서 작성 및 발간						

6 예산 사항

소요예산

- 총 예산액 : 8,895천원
- 세부내역

구분	산출내역	금액	비고
계		8,895,000원	
일반운영비	정책간담회 진행비 10,000원×31명×1회=310,000원 공청회 참석수당 150,000원×5명×1회=750,000원 공청회 진행비 15,000원×30명×1회=450,000원	1,510,000원	
회의운영비	사업자문회의 수당 150,000원×4명×5회=3,000,000원 사업자문회의 진행비 10,000원×9명×3회=270,000원 총괄자문회의 수당 150,000원×5명×2회=1,500,000원 총괄자문회의 진행비 15,000원×8명×2회=240,000원 심사수당A 150,000원×4명×1회=600,000원 심사수당B 150,000원×5명×1회=750,000원 심사자료 우편료 25,000원×1식=25,000원	6,385,000원	※회의수당근거: 대표이사 방침 제370호 (2014.11.14)
도서인쇄비	보고서 제작비 10,000원×100부×1회=1,000,000원	1,000,000원	

- 예산과목 : 선도적 복지정책개발, 연구개발,
 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협약제도 도입 방안

예산집행계획(분기별)

*단위, 천원 / 금액·비율은 누계

사업명	예산	3월	6월	9월	11월
법인 직영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협약제도 도입 방안	8,895 (100%)	-	7,025 (79%)	8,895 (100%)	8,895 (100%)

7

행정사항

서울시 관련 부서 업무협조 및 참여 요청

-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 공문 발송 등. 끝.